

충청북도농촌진흥원시험·분석및검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농촌진흥원시험·분석및검정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충청북도농촌진흥원시험·분석및검정에관한조례”를 “충청북도농업기술원시험및분석에관한조례”로 한다.

제1조, 제3조제1항, 별표1, 별지제1호서식 내지 별지제3호서식중 “농촌진흥원”을 “농업기술원”으로 한다.

제1조,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제1호·제3호중 “진흥원”을 “기술원”으로 한다.

제1조, 제3조제1항제2호, 제4조제1항, 제8조, 제11조제1항, 별표1, 별표2,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3호서식중 “분석 및 검정”을 “분석”으로 한다.

제2조제1호중 “농업기술, 작물, 원예, 축산”을 “농작물”로 하고 동조제3호를 삭제한다.

제3조제1항, 제5조, 제6조제1항·제2항, 제7조제1항·제2항, 제8조, 제9조제1항·제2항중 “진흥원장”을 “기술원장”으로 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시험의 의뢰는 시험목적, 처리기간 및 작물재배시기등을 감안하여 여름작물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겨울작물은 6월 1일부터 7월 15일

까지 신청한다. 다만 작물재배시기와 관계없는 시험의뢰는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제7조의 제목중 “거절”을 “거부”로하고 동조 제1항 제1호를 삭제하며 제2호 내지 제4호를 제1호 내지 제3호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내지 제3호서식중 “농촌진흥원장”을 “농업기술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3호서식중 “검정”을 삭제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